

제 7 장 무역구제

제1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1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동종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 나.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그 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제7.2조 조건 및 제한

1. 한쪽 당사국은 제2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는 정보를 검토하고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조사의 개시로부터 30일 내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에 따라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3. 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및 제4조제2항나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및 제4조제2항나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개시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와 기간을 제외하고
 - 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또는
 -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후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어떠한 당사국도 이전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7.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8. 당사국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속서 2-나(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7.3조

잠정조치

1. 자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 당사국은 잠정적으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그 조치의 적용 후 협의를 개시한다.

3.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3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4. 그 당사국은 제7.2조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7.1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않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2조제5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7.4조

보상

1. 한쪽 당사국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후 30일 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적용되어 왔고 그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 한, 제2항에 따라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권리는 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년 동안에는 행사되지 않는다.
4.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5. 모든 보상은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총 적용기간을 기초로 한다.

제7.5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 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려는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임시 서면 통보를 즉시 제공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

4.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2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7.6조

일반규정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6조,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그들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관련 세계무역기구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에 근거해야 할 것이라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목적상, 양

당사국은 잠정조치의 부과 후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판정 전에, 반덤핑협정 제6.5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4조를 저해함이 없이,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를 보장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3. 조사의 수행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이해당사자들에게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 동안 그들의 견해를 표시하기 위한 청문 기회가 부여된다.

제7.7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한다.

2.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합치되게, 신청에 관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7.8조 약속¹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 그 당사국은 가격에 대한 약속을 자국의 당국이 고려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자국의 절차에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반덤핑 협정 제 8 조(가격 약속)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18 조(약속)에 합치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관한 서면 정보를, 그러한 약속을 제의하고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한다.

2. 반덤핑 조사에서,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덤픽과 그러한 덤픽으로 발생한 피해를 긍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국내법과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3. 상계 관세 조사에서,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그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발생한 피해를 긍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법과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 및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7.9조

누적적 평가

2개국 이상으로부터의 수입이 동시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의 대상이 될 때,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수입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수입 상품 간 경쟁 조건 및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 간 경쟁 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

제7.10조

공공이익의 고려

양 당사국은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공공이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7.11조

공청회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서면 신청을 접수한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7.12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3절

무역구제위원회

제7.13조

무역구제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무역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무역구제 조치를 담당하는 각 당사국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2. 양 당사국은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하여 정보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무역구제 사안에 관한 그들 각자의 법과 그 법의 적용, 그리고 무역 정책의 일반적인 모든 측면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경우 협력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회합한다.

제4절

정의

제7.14조

정의

제1절의 목적상,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7.1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않은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우려란 단순한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닌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0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부속서 2-나(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규정된 양허표가 그 당사국이 그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철폐하도록 규정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과도기간은 그 양허표에 규정된 그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에 5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